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책무 부여 등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49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책무 부여 등	2

I. 개요

1.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7.
- (3) 회 부 일 : 2025. 8.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농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책무 부여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식품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u>제공하기 위하여</u>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 <u>제공하고,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u>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⑤ -----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생략)	----- -----및 지 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식품비 등에----- ----- -----. ⑥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2호1)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하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2) 각 호의 급식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3조제2항3)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5조4)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3)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④ (생략)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⑤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식품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사회복지급식소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⁵⁾하고 있는바,

사회복지급식소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독려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임의규정으로, 현재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총 117개 지방자치단체에만 120개소⁶⁾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식소는 2024년 12월 기준 총 1만 4,638개소 중 약 23%에 해당하는 3,428개소에 불과함⁷⁾.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6) 청주는 3개소, 창원은 2개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됨.

- 셋째,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과 관련하여, ‘지역내’의 범위가 사회복지급식소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계절별, 품목별 공급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산이나 저가의 국내산 농축수산물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식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도 있음.

- 참고로, 인천 옹진군의 경우 7개 면이 모두 도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서울 마포구 역시 대도시 특성상 지역내 농축수산물을 생산·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의 취지인 ‘농어업기반 안정화’는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내역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개별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경비 지원은 하지 않고, 개별 경비 지원은 시설 이용자 특성 및 어린이 등 다른 급식소와의 형평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함.

7) [참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별 등록 사회복지급식소 현황

□ 인천 용진군:

- 7개 면의 섬으로 되어 있어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도 등록급식소의 식단 제공 시 각 면에서 재료 수급의 어려움을 매번 감수하고 있음.

□ 서울 마포구:

- 대도시로 지역내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재 무료급식의 경우 1인당 단가가 4,500원으로 양질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국내산 또는 지역내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급식의 양과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별 등록 사회복지급식소 현황

시도	센터명	급식소 수	시도	센터명	급식소 수	시도	센터명	급식소 수
총계		3,428						
서울	서울도봉구	32	경기	의정부시	31	충남	태안군	5
서울	서울노원구	10	경기	부천시	156	전북	전주시완산구	37
서울	서울강서구	61	경기	평택시	17	전북	군산시	26
서울	서울금천구	6	경기	동두천시	20	전북	익산시	39
서울	서울송파구	49	경기	안산시	81	전북	정읍시	16
서울	서울강동구	12	경기	고양시	55	전북	남원시	7
서울	서울중랑구	10	경기	구리시	2	전북	김제시	16
서울	서울마포구	35	경기	시흥시	43	전북	진안군	0
서울	서울광진구	64	경기	하남시	30	전북	부안군	7
부산	부산진구	15	경기	용인시	38	전남	순천시	42
부산	부산해운대구	20	경기	파주시	35	전남	광양시	39
부산	부산사하구	28	경기	김포시	45	전남	담양군	4
대구	대구중구	16	경기	화성시	61	전남	보성군	0
대구	대구동구	15	경기	양주시	16	전남	화순군	33
대구	대구서구	14	경기	연천군	5	전남	장성군	12
대구	대구북구	26	경기	광명시	4	전남	신안군	10
대구	대구수성구	14	강원	춘천시	7	전남	나주시	31
대구	대구달서구	38	강원	원주시	34	경북	포항시1	46
대구	대구군위군	0	강원	강릉시	50	경북	김천시	31
인천	인천동구	3	강원	동해시	3	경북	안동시	34
인천	인천미추홀구	40	강원	태백시	4	경북	구미시	43
인천	인천연수구	21	강원	속초시	48	경북	영주시	20
인천	인천남동구	55	강원	영월군	6	경북	영천시	36
인천	인천부평구	35	충북	청주시1	0	경북	상주시	21
인천	인천계양구	105	충북	청주시2	0	경북	문경시	20
인천	인천서구	85	충북	청주시3	95	경북	경산시	49
광주	광주동구	16	충북	충주시	40	경북	의성군	11
광주	광주서구	35	충북	제천시	34	경북	칠곡군	51
광주	광주남구	27	충북	영동군	31	경북	예천군	4
광주	광주북구	37	충북	증평군	26	경남	창원시1	53
광주	광주광산구	50	충북	진천군	40	경남	창원시2	0
대전	대전동구	21	충남	천안시	57	경남	김해시	12
대전	대전중구	28	충남	보령시	14	경남	통영시	20
대전	대전서구	44	충남	아산시	26	경남	거제시	25
대전	대전유성구	33	충남	서산시	9	경남	양산시	22
대전	대전대덕구	25	충남	논산시	25	경남	함안군	12
울산	울산남구	22	충남	계룡시	12	경남	밀양시	9
울산	울산동구	18	충남	당진시	34	경남	진주시	41
울산	울산울주군	18	충남	서천군	16	경남	사천시	26
세종	세종시	32	충남	예산군	8	제주	제주1	45